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5971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경울, 이영대, 이보미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4. 22.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1가소108553 판결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94,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9. 25. 19: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고가 원고 차량 하차문 뒷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좌측 슬관절부 심부열상, 대퇴이두근, 비복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의 치료비 지급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6. 12. 29.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11,394,22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1399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를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6. 3.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7364호 판결),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다274430호 판결)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5차선 대로를 무단 횡단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로 11,394,22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1,394,2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치료비를 지급한 것은 그 채무 없음을 알면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그 공제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알고서도 피고에게 그 치료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가해자 내지 운행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자동차공제계약의 보험자 또는 공제사업자(다음부터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게 자기에게 직접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자배법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 등은 그 청구를 받으면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제2항), 그 지급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바(제48조 제2항 제1호), 위와 같이 자배법에 따라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고가 청구하는 경우 공제금(보험금) 등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가불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가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관련사건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 없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원고의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비채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채광, 판사 석준협, 판사 권양희